

- ☑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인하여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의 역진적 단가체제로 인하여 농업인 등이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안정적 제도운영 어려움
- ☑ 이에 따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
 - 직전년도 기본직불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보다 사업연도 기본직불을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적을 경우 점검대상

1 (개요) 직전 최근 연도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으로 등록된 면적이 등록 신청연도 지급대상 농지등을 등록신청한 면적보다 큰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

- ▽ 매매·상속·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자기 소유의 농지를 타인에게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점유 또는 사용권이 이전된 경우. 다만 관련 법령 등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대상
-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점검대상) 직전년도 기본직불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사업연도 기본직불을 등록한 농지면적합보다 적고 아래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처분의 대상

- * (등록) 등록제한 기간 3년, (수령) 전액환수, 환수금의 3배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기간 5년
- ▽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농업인 또는 △다른 농업법인이 임대차하여 등록/직불금 수령한 경우
 - * (근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농어촌 관광휴양산업 제외)을 영위 금지
- ▽ (불법 전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농지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¹⁾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²⁾그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재임대하는 경우
 - * (근거) 「국유재산법」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국공유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등을 하게 하는 것이 금지

3 (협조 및 조치사항) 부정한 농지 분할에 대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사전 안내 하고 기본직불 등록 이후 적발이 된 경우 엄격하게 행정처분 필요

- ▽ 농관원·지자체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에 대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사전에 교육·홍보(1~3월)
 - * 신청서 또는 문자를 통해 부정한 농지분할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안내
- ▽ 기본직불 등록 이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등록자로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
 - * 등록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농업인의 자진 등록취소 요청, 구제요청 등은 불인정
-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대상 농지(농어촌공사), 국공유지(캠코, 지자체)의 불법 전대가 확인된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

〈 사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등록/수령 시점)

㉠ 영농조합법인 K가 소유한 농지 10개 필지

(1) 영농조합법인 대표 L씨가 10개 필지를 기본직불 등록

☞ 대표 L씨는 농업법인 농지를 농업인으로 신청하였기에 등록취소(농지 분할 X)

(2)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M, N, O이 각각 법인 소유농지를 나누어 기본직불 등록

☞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각 시군구 농업법인 담당자에게 위반통보 및 M, N, O는 모두 부정등록 처리

㉡ 농지소유자 A의 10개 필지를 농업인 B가 임대차계약

(1) 아버지 B가 5개 필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아들 C가 아버지 B가 임차한 5개 필지를 각각 농지를 분할하여 기본직불 등록

☞ 아버지 B와 아들 C는 불법 전대는 아니더라도 부정한 농지 분할로 판단하여 모두 부정등록 처리

(2) 아버지 B는 소유한 10개 필지, 아들 C는 B가 임차한 10개 필지를 각각 기본직불 등록

☞ 아버지 B와 아들 C는 불법 전대는 아니더라도 부정한 농지 분할로 판단하여 모두 부정등록 처리

(3) 동생 D가 농업인 B가 임대차한 10개 농지를 기본직불 등록

☞ 국공유지, 농지은행 등 관련 위탁기관에 B의 불법 전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통보하고 동생 D를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을 점검

(4)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동일경영체에 등록된 아들 C가 아버지 B가 임차한 10개 필지를 기본직불 등록

☞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B의 아들 C는 불법 전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C의 실경작 여부 등을 점검

㉢ 농업인 P, Q, R로 구성된 농가의 10개 필지

(1) 동일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P의 소유농지를 농업인 Q, R에게 임대차 계약하여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

☞ 농업인 P, Q, R 모두 부정한 농지 분할로 모두 부정등록 처리

(2) 동일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P의 소유농지 5개, 농업인 Q의 소유농지 3개, 농업인 R의 소유농지 2개를 각각 구분하여 면적직불 신청

☞ 자경의 경우 농업인 P, Q, R이 모두 신규대상자 등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인정

- ☑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에 대한 처리기준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하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하되,
 -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조에 따라 「보조금법」을 적용

1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대상(농업인, 농지, 금액)을 특정하여 처분명령을 하고 부당하게 취한 직불금(법 제19조제1항, 부당이득금)을 환수

* 법 제19조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직불금을 전액 환수

- ▽ 환수금 등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전(9.30.)까지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제3호) 지급제외

* 따라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업인에 대하여 사업연도 직불금에서 상계하여 지급 금지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농지를 분할하여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의무(법 제20조제2항)

* 제재부가금은 지급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닌, 부정수급 사유와 직접 관련된 농지 등의 지급분에 한하여 부과

- ▽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전·후 부정수급 등의 이유로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경우 1/2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면제, 삭감, 변경, 취소 가능

* 벌금, 과태료 등의 합산은 제재부가금 부가 비율(5배 또는 3배)을 초과할 수 없음

3 부당이득금(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납부 기한 1개월(「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 6%(일할 이율 적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다만 가산금 징수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법 제20조제3항)

4 부정수급자가 납부해야 할 부당이득금(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법 제20조제4항)

- ▽ 「보조금법」 제33조의3(강제징수)에 따라 강제징수는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뿐 아니라 부당이득금(환수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따라 독촉, 압류 등 절차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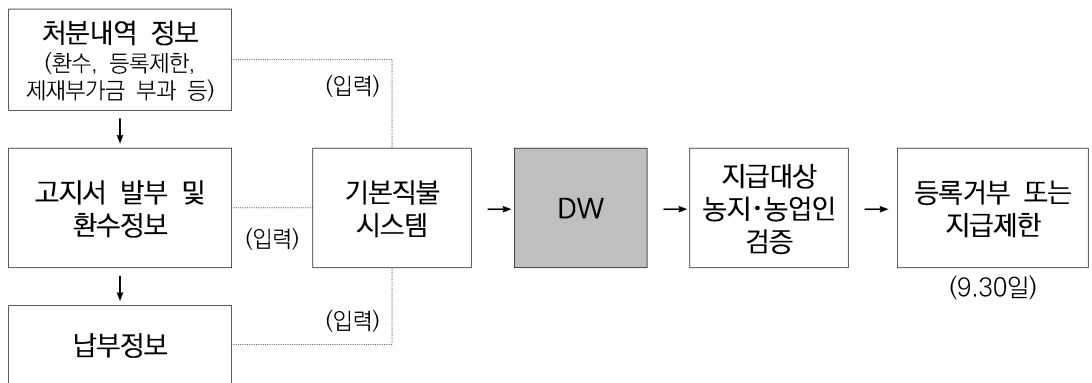
5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기 전(환수처분을 하기 전)에 부정수급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 ☑ 농관원, 지자체에서는 부정수급, 착오지급 등으로 인한 직불금(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 포함)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제한 등 명령을 한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서 입력·보완 등 대상자 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농림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자는 농림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받기 때문에 포괄하여 관리 필요

1 (주요절차)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부정수급 적발, 착오 지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기본직불 시스템을 통해 입력·확인

* (처분) 환수명령, 등록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환수)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환수금액의 납부 정보



- ▽ 부정수급자, 환수대상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DW(DataWare House)를 통해 기본직불 신청자, 등록자,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납부내역 등을 검증
 - 검증결과 부적격인 경우 자동으로 등록거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부정수급 등 관리 추진
- ▽ 법원·검찰청의 수사기관, 정부합동감사·자치감사 등에 따라 부정수급, 환수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관리

2 (정보관리)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부정수급자, 환수금 미납자가 기본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관리(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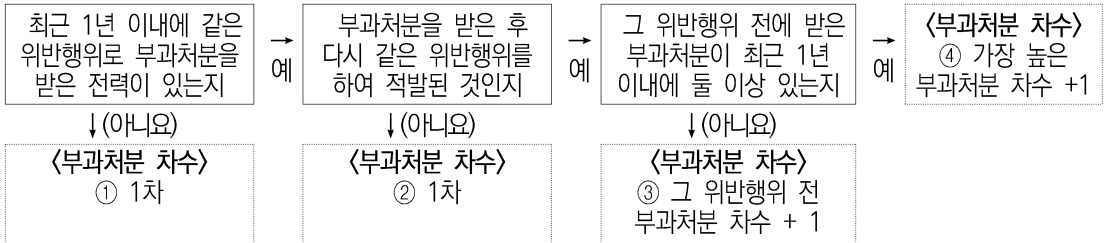
- ▽ 농관원은 기본직불 시스템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정보가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 주기적인 지도·관리 협조

참고 19 과태료 부과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농관원, 지자체)

- * ①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 현장 조사에 따른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 일반기준



- ① 예시 : 2024년 8월 15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5년 7월 15일 적발된 경우 → 1차 처분 부과
- ② 예시 : 2024년 8월 15일 1차 처분을 받고, 2024년 7월 15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5년 7월 15일 적발된 경우 → 1차 처분 부과
- ③ 예시 : 2024년 8월 15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5년 7월 15일 적발된 경우 → 2차 처분 부과
- ④ 예시 : 2024년 8월 15일 1차 처분, 9월 10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5년 7월 15일 적발된 경우 → 3차 처분 부과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 제1항제2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가.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법 제36조제1항)

① (개인정보 활용) 기본직불을 등록하려는 농업인등은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 등을 검증 및 준수사항 관리를 위하여 등록자의 개인정보 활용 필요

▽ (사전 안내) 공익직불제 적용 대상에게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가능(법 제6조의2 신설)

▽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주민정보, 토지대장, 농업외소득 등 자격요건 검증을 위하여 정보 보유기관에 자료를 요청, 정보 수집, 분석 등 추진

* 소농직불 등록자의 경우 농가 구성원도 농업외소득, 농지소유면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가 필요

▽ (본인정보 공동이용) 「민원처리법」 개정('21.10.20.)에 따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MyData)이 가능하도록 규정

* 2024년부터 직불시스템과 행안부 MyData와 연계되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Mydata를 활용하여 가족관계를 전산상 입력 가능하도록 하여 서류제출 간소화 실현

② (공익직불 통합정보망 구축) 공익직불사업의 관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확산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관리, 대국민 성과홍보 등을 위하여 정보화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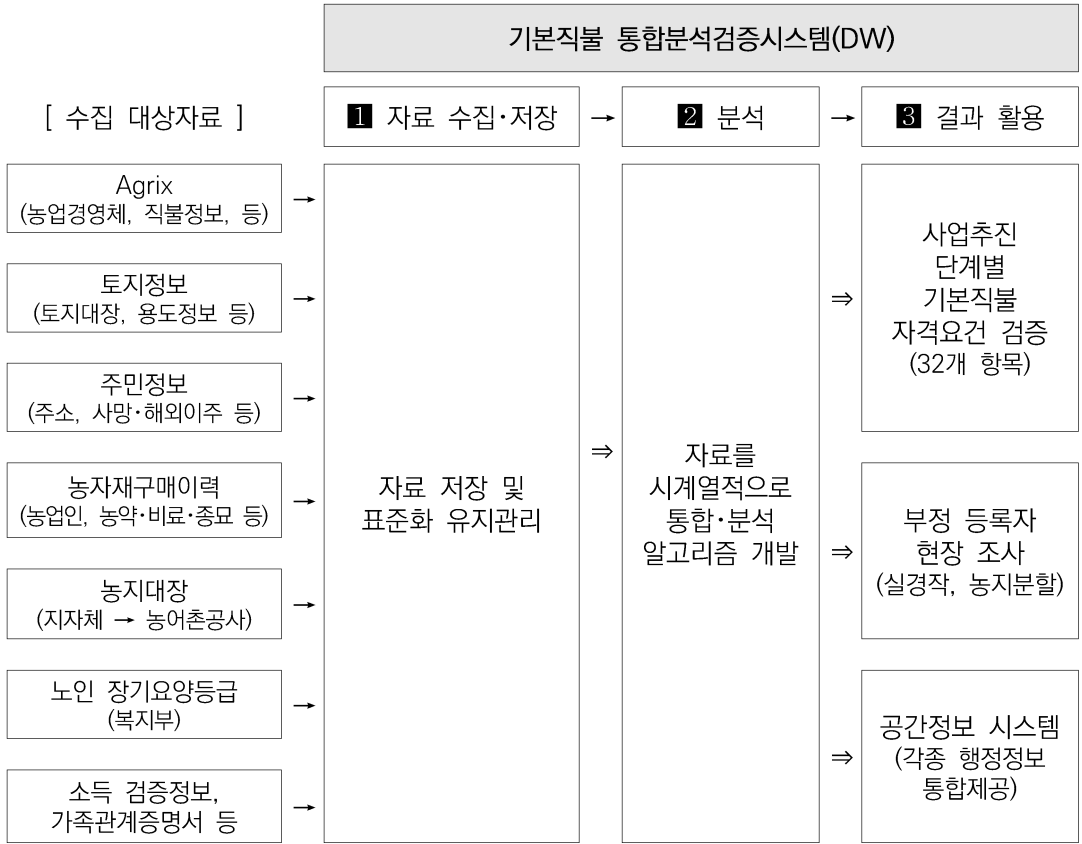
▽ (검증시스템) 착오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농지·소농 자격요건을 실시간 자동검증 시스템 구축

- 자격요건, 실경작 여부 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범위를 확대

*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장기요양판정등급(복지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농지전용부담금정보(농어촌공사), GAP·친환경인증정보(AGRIX) 등(법 제6조의2, 제36조 반영)

▽ (사전검증)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주민번호)·농지(PNU)를 기준으로 공적정보, 농지점검결과, 농지대장 등의 정보를 반영하여 사전에 표준화하고, 신청·접수 전 자격요건 사전 검증을 확대하여 부정신청 방지 및 맞춤형 지원 안내

▽ (통합 정보망 운영) 기본직불 시스템이 차세대 농업e지 시스템에서 오류없이 작동하도록 '25년 7월부터 시험가동 등 절차를 거쳐 '26년부터 본격 운영



1 (자료수집)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비교분석,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하여 각 시스템에 분산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현행화

▽ 농업인과 농지를 기준(PNU)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표준화

* PNU(Parcel Number) : 농업인 주민번호 및 농지의 지번을 기준으로 각종 정보 연계
 (예시) 지번 PNU + 토지대장 정보 + 용도구역(농촌/도시지역, 개발지역 여부) + 전용여부 + 진흥/비진흥 + 지원사업 이력 + ... (현장점검 데이터 등)

2 (분석) 개별 자격요건, 부정수급 관련 분석 논리를 개발·적용

* (사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 ① 농업인의 주소지와 경영체 등록된 행정구역 일치 하는 농지 면적 1,000㎡ 이상, ② 불일치할 경우 행정구역이 일치하는 농지 면적 10,00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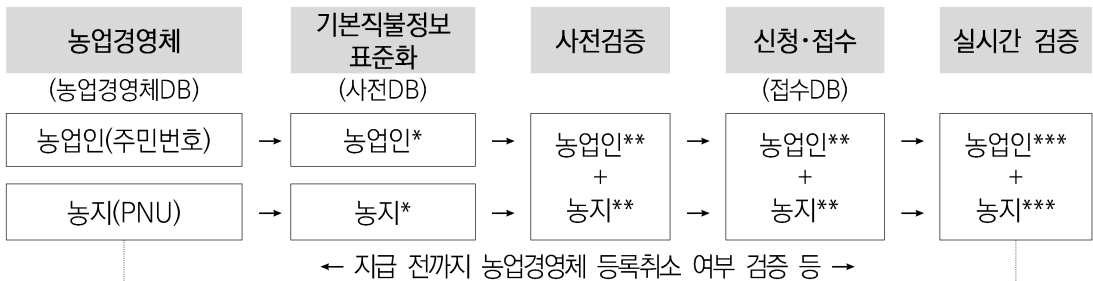
3 (분석결과 활용) 기본직불 자격요건 검증, 부정 등록자 현장조사, 공간정보 시스템 등에 활용

참고 21 사전검증 및 농업인·지자체 안내

-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및 농지를 기준으로 기본직불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여 사전 검증 후 대상 농업인과 지자체 안내

* 신청·접수 전 지급대상 농업인·농지·소농 등 사전 검증하여 적격인 농업인에게 안내하고 접수단계에서 지자체 검증

- 정보 오류로 인한 착오 지급을 방지하고 부적격자의 등록을 사전 차단



1 (표준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를 기준으로 주민정보, 토지대장, '농지의 형상 이행점검', 농지대장 등의 정보 중 기본직불사업에 필요한 정보로 현행화

* 신청·접수 전까지 농업경영체의 농업인·농지의 변동사항을 모니터링하여 매일 갱신

- ▽ 경영체 정보관리 정책의 차이로 발생하는 정보의 오류 해소* 및 사전 검증의 정확도를 향상할 목적

* (사례) 농지전용, 농지 미이용면적(폐경) 등으로 경영체의 정보수정이 없는 경우 반복적 점검 및 검증오류 발생

2 (사전검증) 법령에서 정한 지급대상 농업인·농지·소농직불 자격요건 및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검증 확대하여 농업인 안내 및 부적격자 신청 방지

- ▽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농지를 검증하고 소농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하여 신청 안내
- ▽ 검증결과 부적격인 항목은 신청서 인쇄단계에서 농업인에게 사유 및 보완 서류 안내하여 사전에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

3 (접수단계) 사전 검증결과 농업인별 부적격인 항목에 대하여 시스템을 통해 안내 하여 읍·면·동 접수단계부터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부적격인 농업인 등록 방지

4 (실시간 검증) 접수 이후 주민정보, 토지대장, 농지대장 등의 각종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 신청정보를 수정(G4C)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등록정보의 신뢰 향상

대 상	항 목	검증결과 활용
① 농 지	1 (지급대상 농지) 기존 기본직불 대상 농지 + 1719 실태조사 + (추가 확인)	-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2 (부정수급자 소유농지)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은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 다만, 읍면동에서 공동소유 등이 확인될 경우 본인 지분 면적 인정
	3 (농지전용) 농어촌공사 및 농지 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의제된 경우 포함)된 경우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4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중 농업법인 ≠ 동일 농업법인 경영체에 등록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5 (간척지 농지) '98~'00년도 이후 조성된 간척지 중 논으로 활용되는 경우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6 (농지처분명령) 농지 대장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7 (초지) 토지용도구역 코드 중 초지(UFF100)인 경우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8 (논이모작)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한 정보 중 '논이모작' 및 임차농지로 확인된 경우 (동계 단기 임차 : 10월~5월)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9 (임대차계약 신규·갱신) 자기의 소유농지가 아닌 경우 농업경영체 및 기본직불 등록정보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등록신청연도 9월 기준 종료 * 국·공유지 등 모두 포함	- 신청 대상 농지에 포함 - 동일경영체 및 농가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로 확인될 경우 예외 처리(읍면동 확인) - 종중소유 농지, 신청인이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 등이 확인된 경우 1년 단위 예외 처리(읍면동 확인) - 예외 처리가 되지 아니한 경우 농지 대장을 통해 9.30일까지 검증
	10 (지목이 임야)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 신청 대상 농지에 포함 - 농지 대장을 통해 9.30일까지 검증
	11 (토지대장 검증) 토지대장 말소	- 신청 대상 농지에 포함 - 지자체에서 분·합필, 환지 등 확인 후 갱신
	12 (진흥/비진흥 검증) 토지e음(국토부) 정보 확인	- 신청 대상 농지에 포함

대 상	항 목	검증결과 활용
	13 (농지중복)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서 (실경작면적 + 휴경면적) > 공부상면적인 경우	- 신청 대상에 포함 * 어느 신청자든지 중복농지 및 실경작자 신청 유도 → 지자체 확인
② 농업인	14 (0.1ha 미만) 지급대상 농지의 실경작 면적합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이행점검 결과 휴경 < 0.1ha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15 (신규대상자) 직전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10.1일 이후 등록여부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이상(직불금 지급농지 제외)	- 대상일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 다만, 읍·면·동 직전년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입증된 경우 예외 처리 및 신청서 인쇄
	16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17 (사망·해외거주) 주민정보 검증결과 사망·해외거주민 경우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18 (환수금 미납부자) 기본직불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에 환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대상에 포함 - 9.30일 이전까지 미납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안내
	19 (도시거주 여부) - 동 지역 거주자 중 토지용도구역 검증결과 도시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대상에 포함 - 도시거주자는 주업요건, 소농의 농촌거주 3년의 검증대상에 포함
	20 (주업요건) 도시거주자 중 - (주소지=농지) 시군기준 0.1ha 이상(주소지와 농지가 읍·면·동 단위로 연접 + 직전 1년이상 동일 시·군 거주) - (주소지≠농지) (농업인) 시군 면적합(농지가 시·군·구 단위로 연접) 1ha 이상, (농업법인) 시군 면적합(농지가 시·군·구 단위로 연접) 5ha 이상	- 주업요건 미충족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및 신청서 미출력 * 직전년도 농산물 판매금액(농업인 900만원, 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이 입증된 경우 예외 처리 및 신청서 인쇄
	21 (실경작 여부) - (신규등록자) (기존수혜 X) 또는 (정책대상 X) - (관외경작자) 주소지와 농지 어느 하나라도 거리가 50km 이상인 경우	- 신청 대상에 포함 - 신청서 안내에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주민 2명(총 3명)의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안내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1~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 직불금 대면 신청자로 분류	- 신청 대상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전수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 - 등급 판정자는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및 보건복지부에 조사 의뢰	

대 상	항 목	검증결과 활용
	22 (농외소득 3700만원)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 대상에 포함 * 가장 최근의 소득금액이 표출되며 사전검증시에는 2022년도 소득표출, 농업인 신청시 참고자료로 활용
	※ ①(농업인)과 ②(농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신청 대상인 농업인 중	
③ 소 농	23 (0.5ha 이하) 경영체 기준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 0.5ha 이하	- 모두 충족할 경우 소농형식으로 신청서 인쇄
	24 (역전구간) 지급대상 농지를 면적직불로 산출할 경우 130만원 미만	- 신청서의 ④-1(주민등록등본), ④-2 (가족관계증명서)를 자동으로 제공
	25 (농촌거주 3년) 등록신청 직전연도 12월 기준 농촌지역에서 연속하여 3년 이상	
	26 (영농종사 3년) 등록신청 직전연도 12월 기준 연속 3년 경영체등록 또는 직전 3년 연속 직불금 수령	
	27 (농지면적합 1.55ha 이상) 소농직불 신청 대상의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 합 1.55ha 이상	- 소농직불 형식으로 신청서 인쇄·안내 -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정보를 제공
	28 (시설재배업 소득) 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시설재배업 3800만원 이상인 대상	- 소농직불 형식으로 신청서 인쇄·안내 - 직전년도 실제소득을 읍면동 신고
	29 (축산업 소득) 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축산업 소득 5600만원 이상인 대상	- 소농직불 형식으로 신청서 인쇄·안내 - 직전년도 실제소득을 읍면동 신고

- ☑ 주민정보, 토지대장, 농지대장의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하여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읍면동을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안내
- ☑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접수 후에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읍면동을 통해 검증할 수 있도록 안내

1 지급대상 농지

항 목	부적격 원인	검증결과 활용
①토지대장	▶ 말소, 면적 부적합	▶ 분·합필, 환지 여부, 농지전용(분필과 동시 일부 농지전용) 검토 → 토지대장 G4C 데이터 제공
	▶ 소유자 변경	▶ 임대차계약 및 실경작 여부 검토
②진흥/비진흥	▶ 토지e음에서 진흥/비진흥 변경	▶ 변경정보로 반영하되 토지e음의 등록정보가 잘못된 경우 예외처리
③농지중복 등록	▶ 필지 기준 두 명 또는 다수의 농업인이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신청	▶ 공동소유 농지인 경우 본인 지분면적 확인 → 본인 지분 면적으로 신청 면적 수정 ▶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실경작 여부 확인 ▶ 지급대상자 확정(9.30일) 전까지 농지중복이 확인되는 경우 모두 등록취소(농식품부)
④경영체 제외	▶ 농업경영체에서 해당 필지 제외 조치	▶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⑤농지전용	▶ 농지대장에서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 기록	▶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⑥타용도 일시사용	▶ 농지대장에서 타용도 일시사용 기록	▶ 해당 필지 등록취소
⑦농지 처분명령	▶ 농지대장에서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것으로 기록	▶ 해당 필지 등록취소(임대차계약과 관련 없이)
⑧지목이 임야인 경우	▶ 농지대장에 없음	▶ 지자체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에 포함하여 농지로 인정되는 경우 농지대장 등록 ▶ 9.30일까지 농지대장에 미등재된 경우 해당 필지 등록취소

항 목	부적격 원인	검증결과 활용
⑧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기본직불 시스템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로 확인	▶해당 필지 등록취소 ▶다만, 공동소유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수정하고 예외 처리
⑨임대차계약	▶농지 소유자와 등록자 불일치	▶농지대장 현행화 ▶동일경영체 및 농가 구성원(비농업인 포함)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로 확인되면 예외 처리 ▶중중소유 농지, 신청인이 재산세납부, 재산세납부자와 임대차 등이 확인된 경우 1년 단위 예외 처리 ▶국·공유지, 신규·갱신이 필요한 경우 농지대장 현행화
⑩전년도 지급면적 보다 신청면적 초과 필지	▶반복적인 폐경면적 또는 생산·개량시설면적 신청 개연성 높음	▶전년도 폐경면적 또는 생산개량시설면적을 금년도에 신청면적에 포함한 경우 농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으로 증빙(폐경해소사진 등)이 확인되면 예외 처리(직불 변경 등록기간까지, ~6월) * 직불 변경등록기간(~6월)까지 변경신청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 안내 필요

2 지급대상 농업인

항 목	부적격 원인	검증결과 활용
①주민정보	▶주소 불일치	▶G4C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수정
	▶사망·거주 이상	▶농업인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사망·해외거주 확인, 승계대상자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②계좌검증	▶등록계좌, 개설자 등 불일치	▶계좌번호, 은행 등 수정 ▶두음법칙, 계좌주 동일한 경우 예외 처리
③경영체 제외	▶농업경영체에서 농업인 제외 조치	▶농업인에게 통보하여 사실 여부 확인 및 승계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④주업요건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연접 확인, 농산물 판매 증빙일 경우 적합 처리 ▶자격요건이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취소
⑤신규등록자	▶직전년도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10.1일 이후 등록여부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이상 (직불금 지급농지 제외)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⑥부정수급자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농업인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 전부 미납자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⑦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미만	▶폐경 등이 확인되어 등록 이후 0.1ha 미만으로 확인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
⑧농업외종합 소득 3700만원 이상	▶국세청을 통해 직전년도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으로 검증	▶해당 농업인 등록취소(농식품부 주관) ▶다만 농업인의 경정신고로 소득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

3 소농직불 자격요건

항 목	부적격 원인	검증결과 활용
①농가구성원 소농직불 중복신청	▶농가 구성원이 각각 소농직불을 중복*신청 * 소농+소농, 소농+면적	▶농가 구성원 요건 확인 후 동일 농가인 경우 모두 면적직불로 전환 * 농가 구성원은 신청접수 당시 신청서에 입력된 세대원 기준으로 검증 ▶아울러 농가 구성원 간의 농지분할 여부 조사 후 부정할 농지분할이 확인된 경우 엄격하게 행정처분
②영농종사 3년 이상	▶최근 3년간 농업경영체 매월 백업 정보 중 해당 농업인 주민번호 기준 3년(36개월) 미유지 ▶최근 3년간 해당 농업인 직불금 연속 3회 미만 수령	▶본인의 질병으로 3개월 미만의 경영체 등록이 취소된 경우 예외 처리 ▶면적직불로 전환
③직전 연도 기준 농촌거주 기간 3년 이상	▶3년 이내 농촌지역 전입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여 직전 주소지 농촌지역 여부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예외 처리 ▶면적직불로 전환
④농가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합 1.55ha 이상	▶농가 구성원의 주민번호로 등록된 토지대장의 전·답·과수원의 면적합이 1.55ha 이상	▶공동소유인 경우 농가 구성원의 지분(소유면적)을 확인하여 농지면적합이 1.55ha 미만인 경우 예외 처리 ▶면적직불로 전환
⑤농업인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	▶국세청을 통해 직전년도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으로 검증	▶면적직불로 전환(농식품부 주관) ▶다만 농업인의 경정신고로 소득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
⑥농가 구성원 농업외소득합 4500만원 이상	▶국세청을 통해 농가 구성원의 직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이상으로 검증	▶면적직불로 전환(농식품부 주관) ▶다만 농업인의 경정신고로 소득변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
⑦축산업소득 5600만원 이상	▶신청접수 당시 농업인이 제출한 소득 확인	▶이상일 경우 면적직불로 전환
⑧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이상	▶신청접수 당시 농업인이 제출한 소득 확인	▶이상일 경우 면적직불로 전환